



제417회국회(임시회)
제2차보건복지위원회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의 형벌 폐지〉

■ 정부제출(의안번호 제1114호)

2024.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연광석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의 형벌 폐지	2

I. 개요

1. 정부안(의안번호 제1114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정부
- (2) 제 안 일 : 2024. 6. 28.
- (3) 회 부 일 : 2024. 7. 1.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가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나 사회복지법인·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해당 보수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경우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로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의 형벌 폐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벌칙 부과대상을 제13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등 미이수자에 대해 벌금 3백만원 이하에서 과태료 3백만원 이하로 변경함(안 제55조 및 제58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55조(벌칙) <u>제13조</u> 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5조(벌칙) <u>제13조제1항</u> 을 --- ----- --.
제58조(과태료) ① (생략) ② <u>제13조제2항 단서</u> 및 제3항, 제11조의4, 제18조제6항, 제24조, 제31조, 제34조의3, 제34조의4, 제37조, 제3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5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8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u>제13조제2항 본문·단서</u> -- ----- ----- ----- ----- ----- --.
③ 삭제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나. 검토의견

-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채용 및 지방자치단체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사회복지법인·시설 설치·운영자, 그리고 보건복지부장관이 명하는 교육 또는 정기적인 보수교육 등을 받지 않은 사회복지사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칙(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와 더불어 사회복지사에 대한 교육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에게 불리한 처분을 한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자 및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미이수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사회복지사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벌금은 형벌의 일종으로 금액이 많다는 점에서 과료(科料)와 구별되고 이를 납입하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¹⁾될 수 있는 반면, 과태료는 형벌이 아니고 일종의 행정처분으로서 금전벌에 해당하며 형법총칙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벌금보다 경한 제재수단임.

- 관련 규정의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1983년 5월 21일 개정·시행된 법률 제3656호²⁾에서 사회복지사 채용에 관한 규정과 함께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고,

1) 「형법」

제69조(벌금과 과료) ① 벌금과 과료는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벌금을 선고할 때에는 동시에 그 금액을 완납할 때까지 노역장에 유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 과료를 납입하지 아니한 자는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3656호, 시행 1983.5.21.)

제6조(사회복지사의 채용) 사회복지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삭이상의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제27조(벌칙) 제6조, 제13조의2제2항, 제14조 또는 제1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후 2007년 12월 14일 개정·시행된 법률 제8691호³⁾에서 사회복지사 채용에 관한 규정에 사회복지사의 교육 이수 의무 등이 추가로 규정되면서, 사회복지사가 보수교육 등을 받지 않은 경우도 벌금 부과대상에 포함되었고 과태료 규정도 신설되었음.

□ 개정안은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고, 과태료 부과만으로도 교육 이수 등의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취지로 보임.

- 참고로, 사회복지사가 현행법 상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했을 때 벌금을 부과한 경우는 없었음.

< 보수교육 미이수자 현황 >

연도 현황	`19		`20		`21		`22		`23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인원 (명)	비율 (%)
의 무 대 상 자	57,139	100%	63,911	100%	68,941	100%	65,115	100%	76,261	100%
이 수 자	51,218	89.6%	57,303	89.7%	61,107	88.6%	57,255	87.9%	66,932	87.8%
미이수자 (A)	5,921	10.4%	6,608	10.3%	7,834	11.4%	7,860	12.1%	9,329	12.2%
이수처리 완료자 (B)	3,076	2.7%	3,263	2.7%	5,069	4.0%	5,426	4.2%	7,733	5.3%
과태료 부과대상자 (A - B)	2,845	5%	3,345	5.2%	2,265	3.3%	2,434	3.7%	1,596	2.1%

* 보건복지부 제공

** 이수처리완료자는 미이수자 중 교육 추가 이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른 면제자(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종사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

3)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9766호, 시행 2009.12.1.)

제13조(사회복지사의 채용 및 교육 등) ①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회복지사를 그 종사자로 채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사회복지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교육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정기적으로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그 법인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에 대하여 제2항 단서에 따른 교육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벌칙) 제1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현행 보수교육 미이수자 형벌 및 과태료 규정 >

구분	변경 전(현행)	변경 후(개정안)
의료 및 학교사회복지사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	벌금 300만원	과태료 300만원
사회복지법인·시설 사회복지사 중 보수교육 미이수자	벌금 300만원+ 과태료 300만원	과태료 300만원
보수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법인·시설 운영자	벌금 300만원+ 과태료 300만원	과태료 300만원

□ 사회복지사가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은 연간 최소 8~12시간 정도⁴⁾이고, 유사 입법례에서도 보수교육 미이수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복지사의 보수교육 미이수에 대한 형벌규정을 폐지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일응 타당한 측면이 있음.

<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중 의무교육 미이수시 처벌 규정 >

법률	의무교육 대상자	의무교육 미이수시 처벌 규정
「아동복지법」 제26조, 제75조제3항제1의2호 및 제2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아동복지시설장, 종사자, 아동복지전담공무원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노숙인복지법」 제20조, 제28조제1항제2호	노숙인시설 종사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제27조제1항제3호, 제3의2호	산후조리업 종사자, 산후조리업자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42조제1항제12의5호	장례식장영업자와 그 종사자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의료기기법」 제6조의2 및 56조제1항제1호	의료기기 제조업장의 품질책임자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4)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① (생략)

② 법 제13조제2항 본문에 따라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연간 12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③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하 생략)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의견

- (보건복지부: 수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과태료와 벌칙이 중복된 법령의 정비가 필요하고 과태료 부과로 집행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사회 복지사 교육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수용) 개정안에 이견 없음.

문 의 처
02)6788-5497

